◉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-106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20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화평법")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, 유독물질의 지정기준(화평법 시행령 별표 1) **마목과 사목에 해당하는 26종 물질**을 고유번호 "2024-1-1223" 란부터 "2024-1-1248" 란까지 신설
- 수생환경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(영 별표 1의 '마목'): 2024-1-1223, 2024-1-1247
- 반복노출독성이 강하여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(영 별표 1의 '사목'): 2024-1-1248 ※세부적인 결과값은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고시 참조
- 나.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고유번호 "97-1-91" 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
- 고유번호 97-1-91 "무기아연염류" 중 "Zinc carbonate"의 수생유해성이 강하여 유독물 질 지정기준에 해당(영 별표 1의 '마목')하여 제외조항 삭제
- 다.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)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(수입신고 및 영업허가, 유해화학물질의 표시, 취급기준 등)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(부칙)

3. 의견제출

-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4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화학물질등록평가팀, 전화 032-560-7218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e) H	[이디미키시	- 기거 - 기 - Al	H 레거시	31 T O	취원 및 기시 기이	ठेचोठोचो (
					와약물질안신천	홈페이지(www.nics.me.go.kr)
내	「법령정보-	-행정예고」에	게재되어	있음		